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높은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슈로더 미국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H(주식-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로더 미국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H(주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 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미국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H(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http://www.schroders.co.kr))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11년 11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1년 12월 7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http://www.kofia.or.kr)
    - 서면문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상 세 목 차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 예정기간
3. 모집 예정금액
4. 펀드 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 IV. 요약재무정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간이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간 이 투 자 설 명 서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슈로더 미국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95421
A	95422
C	95423
C2	95424
C3	95425
C4	95426
C-e	95427
I	95428
F	95429

2. 모집예정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투자신탁 존속기간 : 별도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5. 분류

- (1)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2)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 (3)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4)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5)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종류형 구조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종류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A	2009-10-6	가입제한 없음 (선후판매수수료 부과)
C	2009-10-6	가입제한 없음 (선후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C2	2010-10-6	종류 C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C3	미설정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C4	미설정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C-e	2009-10-6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I	미설정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법인고객
F	미설정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84 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6 층 (대표전화: 02-3783-0500)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가.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 US Small & Mid-Cap Equity
(2)채권	40% 이하	파생상품 거래에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으로서 잔존만기 1년 이내인 것. 단,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에 한함. (이하 “채권”이라 한다)
(3)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①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②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③ 제①호 및 제②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4)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이하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상기 투자대상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중 주로 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표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 (1) 투자 목적

가.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Schroder ISF US Small & Mid-Cap Equity’는 주로 미국에 상장된 중소형 주식에의 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자본증식 및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참조지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참조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참조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시장 상황,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조 지수의 등장 및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참조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참조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조지수의 변경시에는 해당 내역을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http://www.schroders.co.kr))의 홈페이지에서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지수	Russell 2500 TR Index (USD) 90% + Call 금리 10%
참조지수설명	미국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소형주식으로 분류되는 약 2,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러셀(Russell)사에서 미국 달러표시로 산출하여 제공하는 지수의 90%와 콜금리 10%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된 지수

다만, 위 참조지수는 투자가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를 위한 단순 참조지수로서 투자신탁자 산내 유동성 및 환헤지에 의한 성과 등의 요소는 참조지수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조지수 산출시 종가, 환율 등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투자신탁 성과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가.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ISF US Small & Mid-Cap Equity’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며, 일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판매를 위한 목적이나, 환헤지를 목적으로 현금자산을 일부 보유 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ISF US Small & Mid-Cap Equity’는 미국내 상장된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미국 중소형주란 매입 당시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하위 40%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Schroder ISF US Small & Mid-Cap Equity)의 개요>

펀드명	Schroder ISF US Small & Mid-Cap Equity
투자목적	미국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미국 중소형주란 매입 당시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하위 40%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주식을 의미
펀드설립일	2004년 12월 10일
펀드규모	USD 1,656.8백만 달러(2011년 10월말 기준)
펀드매니저	Jenny Jones
운용회사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North America Inc.
펀드등급 <sup>1</sup>	Morningstar Rating ★★★★☆

주1) 펀드등급: 펀드평가회사인 Morningstar사가 위험과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정 및 발표하는 펀드 등급으로 별표 다섯개가 최상위 등급임을 의미합니다. (2011년 10월말 기준)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Schroder ISF US Small & Mid-Cap Equity)의 주요 운용 가이드 라인>

기준	가이드라인 및 내용	
종목수	70 ~ 90 종목	
종목당 투자 비율	0.5% ~ 5%	
업종별 투자 비중	벤치마크 대비 ± 10%	
저평가 종목 (Mispriced Growth)	50 ~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li> <li>▪ 견실한 재무제표 및 개선되는 현금 흐름을 보이는 기업</li> <li>▪ 매출성장을, 마진증가율 또는 투자자본이익률 성장 대비 낮은 주가를 보이는 기업</li> </ul>
안정수익 종목 (Steady Eddie)	20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이익 및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li> <li>▪ 견실한 재무제표, 풍부한 현금흐름을 보이는 기업</li> </ul>
턴어라운드 종목 (Turnaround)	0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li> <li>▪ 법적, 정치적, 산업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li> </ul>
유동성 자산	5 ~ 10%	

## &lt;피투자 집합투자기구(Schroder ISF US Small &amp; Mid-Cap Equity)의 운용프로세스&gt;



## 나. 위험 관리

## ① 위험관리방법 및 체계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Portfolio Risk and Investment Strategy Manager("PRISM") 등)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 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② 환헤지 방법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100% 수준까지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헤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 1)환헤지는 외화자산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 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 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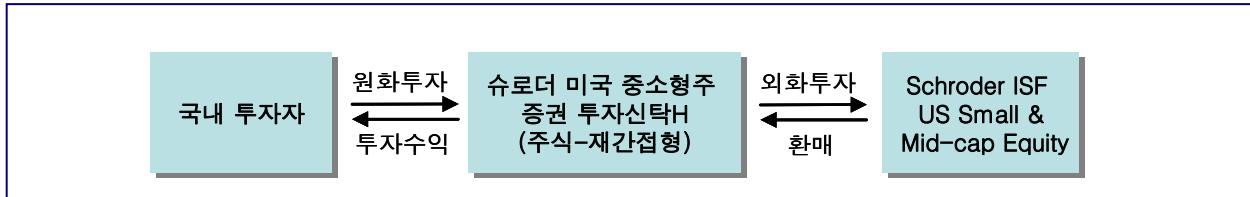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투자자산이 미국내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Schroder ISF US Small & Mid-Cap Equity'에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1)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국제적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예정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주요 투자대상이 국외주식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지역적인 문제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한 주식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 개별 기업의 고유 위험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환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원금 내외에 대해서는 장내·외 선물환 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 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환헤지비율을 조정하여 최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선물환 거래상대방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통화관련 환위험 회피 도구가 유효하지 못하여 적절한 환위험 회피가 곤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위험회피 및 투자 목적으로 옵션, 선물 및 선도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거래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옵션을 매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펀드가 수령하는 프리미엄은 고정되어 있지만, 펀드는 그 금액을 초과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매수인이 옵션을 행사하는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 경우 펀드는 현금으로 옵션을 결제하거나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 교부하여야 합니다. 펀드 내 환헤지를 위하여 일부 선물환 등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더 높은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됩니다.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펀드는 예상된 지급금 또는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실현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 (2)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단일국가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단일 국가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해당 투자국 고유의 국가위험(country risk)에 노출됩니다. 단일국가 투자위험은 해당 국가의 정치, 환율, 경제 등의 상황, 국가부도위험, 자본이전의 편리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나라에 분산투자할 경우에 단일국가 투자위험이 감소하지만, 주로 한 나라에 집중투자할 경우에 단일국가 투자위험이 극대화됩니다.
중소형주 투자위험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보다 더 큰 가격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소형주는 거래량도 급속히 감소할 수 있으며 단기적 변동성의 급격한 확대 및 실제 거래되는 매도/매수 호가간의 차이 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 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국의 중소형주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 위험 등 자세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과 환위험 노출 등에 있어서 더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이나,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 등으로 표시된 주식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는 판매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 가입시 판매회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운용전문인력

## (1) 책임운용전문인력(2011.10.31 현재)

성명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기준)	
장정주	1978	부장	28	39,169억	- 기업은행 자금운용실 - 동양선물 - 슈로더투신(2005.7 ~) - 운용경력 4년 - 서강대 경영학 학사, CFA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및 이력
Jenny Jones	미국 소형주/ 중소형주 주식팀 총괄 본부장 (Head of US Small and SMID Cap Equ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3년 Mutual of America Life Insurance Co.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 역임</li> <li>- 1990년 Oppenheimer Capital, L.P.에서 Small Cap Value 부서장 역임</li> <li>- 1996년 Morgan Stanley Investment Management 입사 후 이사 역임</li> <li>- 2002년 슈로더(북미법인) 미국 소형주 주식팀 헤드로 입사</li> <li>- 2004년 미국 중소형주 펀드 최초 설정 이후 현재까지 책임 매니저</li> <li>- 현재 미국 소형, 중소형주식팀 총괄본부장</li> <li>- 미국 예일대 학사학위 취득. 뉴욕대 MBA 취득.</li> </ul>

##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 (1) 연평균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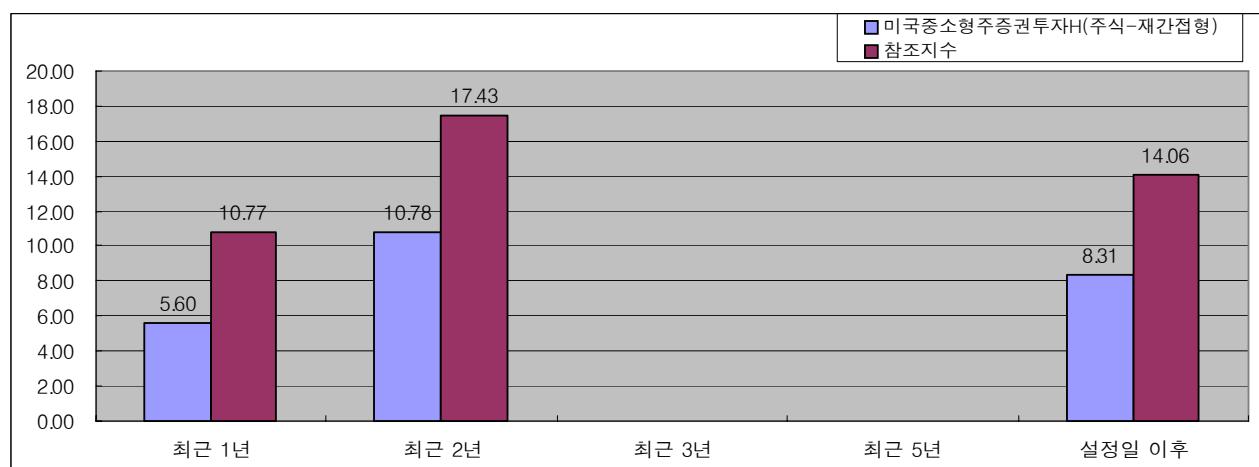
(단위 : %)

연도	최근 1년 10.11.01 ~11.10.31	최근 2년 09.11.01 ~11.10.31	최근 3년	설정일이후 09.10.06 ~11.10.31
펀드	5.60	10.78		8.31
참조지수	10.77	17.43		14.06

주1) 참조지수: Russell 2500 TR Index (USD) 90% + Call 금리 10%

주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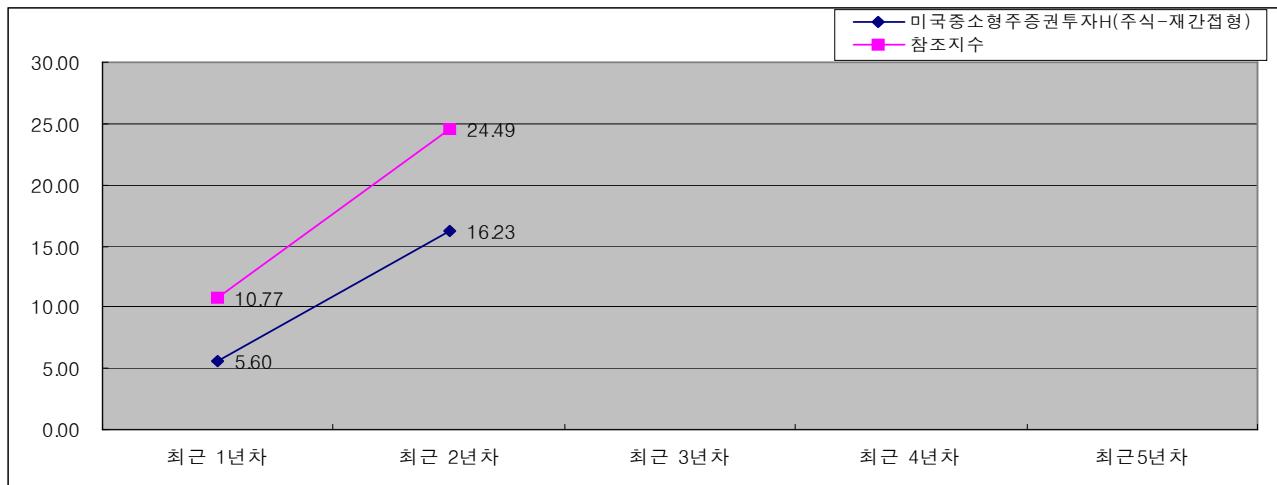
연도	최근 1년차 10.11.01 ~11.10.31	최근 2년차 09.11.01 ~10.10.31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펀드	5.60	16.23		
참조지수	10.77	24.49		

주1) 참조지수: Russell 2500 TR Index (USD) 90% + Call 금리 10%

주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을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III 매입·판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종류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A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매입시
	판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판매시
C, C2, C3, C4, C-e, I, F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판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판매시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 제 25 조의 2(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판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판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3) 판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부과비율 (연간,%)								부과 시기
	A	C	C2	C3	C4	C-e	I	F	
집합투자업자보수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0.1000	최초설정 일로부터
판매회사보수	0.7000	1.5000	1.3500	1.2150	1.0935	1.2500	0.3000	0.0500	매3개월 후급
신탁업자보수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391	0.0411	0.0920	0.0000	0.0000	0.0740	0.0000	0.0000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0.8991	1.7011	1.6020	1.3750	1.2535	1.4840	0.4600	0.2100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1.8588	2.6607	2.5617	1.3750	1.2535	2.4436	0.4600	0.2100	-
증권 거래비용	0.0010	0.0009	0.0010	0.0000	0.0000	0.0009	0.0000	0.0000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

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0.10.06 ~ 2011.10.05]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0.10.06 ~ 2011.10.05]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부과하는 운용보수는 1.0%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 6) 종류C-e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보수는 2010년 5월 3일부터 정율식 인하 적용:

- a. 연 1.32%: 2010년 5월 3일~2011년 5월 2일
- b. 연 1.25%: 2011년 5월 3일~2012년 5월 2일
- c. 연 1.17%: 2012년 5월 3일~2013년 5월 2일
- d. 연 1.09%: 2013년 5월 3일 이후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투자기간	집합투자기구 종류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A	191	589	1,013	2,194
	C	273	837	1,427	3,024
	C2	263	807	1,377	2,925
	C-e	258	769	1,279	2,680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 C2, C3, C4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1년 단위로 종류C2, 종류C3,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하여 산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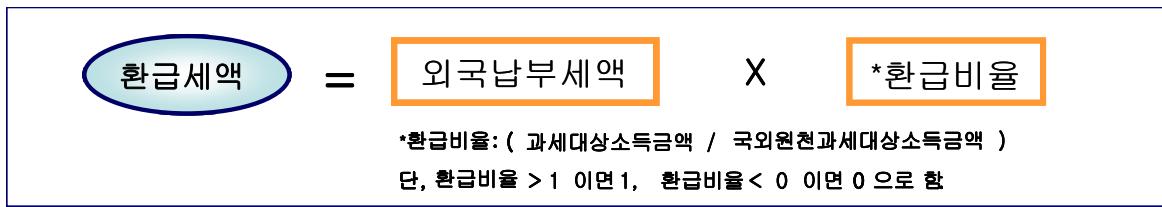
주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연간 1.0%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 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판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 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투자신탁 간 판매보수 및 수수료·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계시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schroders.co.kr">http://www.schroders.co.kr</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http://www.kofia.or.kr</a> )의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 판매회사 영업시간에만 가능.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 또한 이 투자선택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주1) 기준시점은 환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처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주2) 환매의 경우,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권 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독립감사에 대한 일부가사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기( 2009.10.06 - 2010.10.05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2기( 2010.10.06 - 2011.10.05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 2011.10.05 )	( 2010.10.05 )	
운용자산	3,452,713,443	91,736,391	0

증권	3,055,780,417	86,709,968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96,933,026	5,026,423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66,243,522	2,792,623	0
<b>자산총계</b>	<b>3,518,956,965</b>	<b>94,529,014</b>	<b>0</b>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34,792,330	13,242	0
<b>부채총계</b>	<b>334,792,330</b>	<b>13,242</b>	<b>0</b>
원본	3,490,090,359	86,477,251	0
수익조정금	388,187,541	7,076,017	0
이익잉여금	-694,113,265	962,504	0
<b>자본총계</b>	<b>3,184,164,635</b>	<b>94,515,772</b>	<b>0</b>
<b>손익계산서</b>			
<b>항 목</b>	<b>제 2 기</b>	<b>제 1 기</b>	
	( 2010.10.06 - 2011.10.05 )	( 2009.10.06 - 2010.10.05 )	
운용수익	-692,525,562	1,222,144	0
이자수익	4,552,560	73,889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697,078,122	1,148,255	0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587,703	259,640	0
당기순이익	-694,113,265	962,504	0
매매회전율	0.00	0.00	0.00